

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절차 규칙 이의 제기

1. 목적
2. 용어 정의
3.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결정
4. 이의 제기 요청
5. 빠른 이의 제기
6. 이의 제기 신청인의 대리인 지정
7. 통역 및 접근성 지원
8. Exchange에 서류 보내기
9. 비공식 해결
10. 심의회 통지
11. 심의회 전 협의 또는 심의회 일정 조정
12. 심의회 전 협의
13. 심의회
14. 검토 기준
15. 이의 제기의 철회
16. 이의 제기 기각
17. 이의 제기 결정
18. Exchange 이의 제기 결정 분쟁 및 이의 제기

1. 목적

본 절차 규칙은 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WAHBE, 또는 Exchange)에서 내린 자격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Exchange 결정 및 Washington State 법률 이의 제기에 적용되는 45 CFR subpart F의 연방 규칙을 시행합니다. 본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령이나 규칙의 요건이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갖지 않습니다. 본 규칙과 45 CFR part 155, subpart F 연방 규칙이 충돌할 경우 연방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권한: 45 CFR part 155, subpart F

2. 용어 정의

본 절차 규칙의 목적에 따라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 (1) 선납 보험료 세금 공제 (Advance Premium Tax Credit, "APTC")는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42 USC § 18082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개인을 대신하여 건강 플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이의 제기 기록(Appeal record)"은 이의 제기 결정, 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문서, 심의회를 실시한 경우 심의회 증언 기록 또는 심의회에서 발생한 일의 요지를 담은 공식 보고서, 심의회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물을 뜻합니다.
- (3) "이의 제기 신청인"은 유효한 이의 제기 신청을 제출한 개인 신청인, 개인 가입자 또는 고용주를 뜻합니다.
- (4) "신청인(Applicant)"은 *Washington Healthplanfinder*를 통해 건강보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개인을 뜻합니다.
- (5) "Cascade Care Savings"는 RCW 43.71.110에 따른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 (6) "아동 양육 지원 프로그램(Childcare sponsorship program)"은 2021년 4월 25일 Washington State Legislature에 의해 통과된 인가된 아동 양육 시설 직원을 위한 상원 대체 법안 5092, 2021년 법률, Chapter 334에 따라 만들어진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 (7) "본인부담금 경감(Cost-sharing reductions)"은 가입자가 공제금, 코페이먼트, 공동보험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추가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부담금 경감은 실버 플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8) "완전 재검토(De novo)"는 사례에 대한 이전 결정을 참조하지 않는 이의 제기 검토를 뜻합니다.
- (9) "자격 결정(Eligibility determination)"이나 "자격 재결정(Eligibility redetermination)"은 신청인이나 가입자의 공인 건강 및/또는 초과 플랜, 및/또는 금전적 지원에 가입할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Exchange의 결정을 뜻합니다. "자격 결정(Eligibility determination)"은 자격 결정과 재결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자격 결정(eligibility decision)"이나 "자격

결과(eligibility result(s))"라고도 합니다.

- (10) "가입자"는 *Washington Healthplanfinder*를 통해 건강보험 플랜 및/또는 치과보험 플랜에 가입한 개인을 뜻합니다.
- (11) "Exchange"는 chapter 43.71 RCW에 따라 설립된 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를 뜻합니다.
- (12) "금전적 지원(Financial Assistance)"은 아동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본인부담금 경감, APTC, 보험료 지원 등 신청자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 및/또는 *Washington Healthplanfinder*, 주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보험료 지원을 뜻합니다.
- (13) "정당한 사유(Good cause)"는 출두를 하지 않거나, 행위를 하지 않거나 행위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질적 사유나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뜻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는 질병,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 또는 해당 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통지서가 작성되어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 (14) "보험료 지원(Premium assistance)"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를 대신하여 Exchange가 건강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15) "주재자(Presiding officer)"는 최초 자격 결정이나 자격 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Exchange에 의해 본 절차 규칙에 따라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명된 공정한 개인을 뜻합니다.
- (16) "주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 보험 가입자 시장의 저렴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에서 정한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Section 2 (5)와 (6)에 설명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17) "무효화(Vacate)"는 이전 조치를 보류함을 뜻합니다.
- (18) "서면 통지(Written Notice)"나 "서면(in writing)"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전달되었음을 뜻합니다.

3.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결정

- (1) 개인 이의 제기: 이의 제기자나 가입자는 다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 공인 건강 플랜 및/또는 초과 플랜의 최초 가입 신청 또는 현재 공인 건강 플랜 및/또는 초과 플랜 가입자의 자격 유지 결정.
 - (b) APTC 금액을 포함한 APTC에 대한 자격 결정 또는 재결정 및/또는 본인부담금 감면 금액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한 자격 결정 또는 재결정.
 - (c) 다음에 대한 주 보험료 지원금을 포함한 주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보험료 지원 자격 결정 또는 재결정
 - (i) Cascade Care Savings
 - (ii) 탁아서비스 후원 프로그램 (Child Care Sponsorship Program)
 - (d) 특수 가입 기간의 자격 결정.
 - (e) Exchange가 자격 결정을 제때 공지하지 않음.
 - (f) 45 CFR §155.605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 필수 보험의 면제 자격 결정.

- (2) 고용주 이의 제기: 고용주는 다음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 고용주가 최소 필수 보장을 제공하고 최저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음.
 - (b) 고용주가 제공하는 최소 필수 보장, 최소 가격 플랜을 직원이 감당할 수 없음.

권한: 45 CFR section 155.505; 45 CFR section 155.555; 45 CFR section 155.605

4. 이의 제기 요청

- (1) 이의 제기는 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 (2)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의 제기가 지연된 경우 개인 신청인 또는 가입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이의 제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미국 우편 - 이의 제기서에 적힌 주소로 이의 제기 신청서를 미국 우편을 통해 우송.
 - (b) 이메일 - 이의 제기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이메일 발송: appeals@wahbexchange.org. 이메일 신청서는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의를 제기한 자격 결정 날짜, 이의 제기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 (c) 전화 - Exchange 전화 1-855- 859-2512 (무료).
 - (d) 팩스 - 360-841-7653으로 이의 제기 요청서 팩스 전송.
 - (e) 인터넷 - 온라인 상에서 이의 제기 신청서 작성: www.wahbexchange.org.
 - (f) 인편 제출 또는 상업 배달 서비스를 통해 전달: Washington Health Benefit Exchange, 810 Jefferson Street SE, Olympia, Washington 98501.
- (4) Exchange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a) 요청 시, 신청인, 가입자 또는 고용주의 이의 제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 (b) 신청인, 가입자, 고용주의 이의 제기 권리를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 (c) 이의 제기 요청이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워싱턴주 보건사회부), Washington State Health Care Authority(워싱턴주 건강관리국), 또는 Washington Stat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워싱턴주 행정심의회실)에 잘못 전달되었더라도 다른 부분이 유효하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Exchange는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후, Exchange는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다음을 보냅니다.
- (a) 이의 제기 수령을 확인하는 통지서
 - (b) 심의회 없이 비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심의회 전 협의 날짜와 시각을 포함한 이의 제기 절차 일정.

- (c) 금전적 지원 자격에 대한 정보.
 - (i) 이전에 받았던 금전적 지원의 축소나 손실에 대한 자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전적 지원은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 (ii) 이의 제기 절차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의 유지 요청은 금전적 지원 축소 효력일 전 또는 금전적 지원 축소 효력일로부터 10일 이내 중 더 빠른 날까지 해야 합니다.
 - (iii)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이의 제기 신청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모든 APTC에는 이의 제기 신청인의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조정이 적용됨을 안내하는 설명.
 - (d) 절차 규칙 7에 설명된 연방법에 따른 접근성 지원 또는 통역 서비스 요청에 대한 정보.
- (6) Exchange가 본 섹션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경우, Exchange는 반드시 다음을 실시해야 합니다.
- (a) 신청인이나 가입자, 고용주에게 이의 제기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 사유를 알리는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 (b)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정된 이의 제기 요청을 유효한 요청으로 취급합니다.
- (7) Exchange가 이의 제기 신청인의 Washington Apple Health 가입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경우, Exchange는 이의 제기 신청을 이의 제기 신청인의 *Washington Healthplanfinder* 신청 보안 전자 업로드를 통해 보건의료관리국 (Health Care Authority)에 전송합니다.

5. 빠른 이의 제기

- (1) 개인 이의 제기인은 일반 이의 제기 절차 시 다음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함을 증명하여 빠른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
 - (b) 최대한의 기능 달성, 유지, 또는 회복.
- (2) 빠른 이의 제기는 절차 규칙 4에 규정된 일반 이의 제기와 같은 방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3) 빠른 이의 제기 요청 시, 이의 제기인은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a) 빠른 이의 제기 사유에 대한 증거
 - (b) 이의 제기 신청인이 자격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4) 주재자가 빠른 이의 제기 요청을 허용하면, Exchange는 반드시 Exchange가 빠른 이의 제기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이의 제기 결정을 발급해야 합니다.
- (5) 주재자가 요청을 거부한 경우, Exchange는 반드시 다음을 실시해야 합니다.
 - (a) 표준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 요청을 처리하고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결정을 발급합니다.
 - (b)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가능하다면 즉시 전자 통지나 구두 통지를 통해 거부에 대해 알리고, 구두로 통지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를 후속 제공합니다. 거부 통지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i) 거부 사유.
 - (ii) 이의 제기 요청이 표준 90일 절차로 이전될 것을 알리는 설명.
 - (iii) 절차 규칙 4(5) 정보를 포함한 표준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 신청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

권한: 45 CFR section 155.540

6. 이의 제기 신청인의 대리인 지정

- (1) 이의 제기 신청인은 변호사나 가족, 조직 등 개인을 지정하여, 절차 규칙 4에 따른 이의 제기 요청 등 이의 제기 절차 중에 본인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대리인을 지정한 이의 제기 신청인은 다음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a) Exchange가 제공한 이의 제기 양식에 작성하고 이의 제기 신청인이 서명합니다.
 - (b) 이의 제기 신청인이 서명한 다른 서류에 작성하여 지정합니다.
 - (c) Healthplanfinder 자격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 (d) 승인된 대리인이 워싱턴주 활동이 승인된 변호사인 경우, US Mail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낸 출석 통지서를 통해 지정합니다.
 - (e) 후견 명령 또는 위임장 등 이의 제기 신청인을 대표하는 법적 서류를 통해 지정합니다.

권한: 45 CFR sections 155.227 및 155.505

7. 접근성 지원/통역

- (1) 연방 규정에 따라 Exchange 이의 제기 절차는 § 155.205(c)의 접근성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가입자는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은 개인이 제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a)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및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개인.
 - (b)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에게 무료로 다음과 같은 언어 서비스를 제공:

- (i) 150가지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는 전화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통역.
 - (ii) 번역.
 - (iii) 언어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표시한 영어 외 15개 언어의 태그라인.
- (c) 개인에게 이러한 서비스의 가용성을 알리고 서비스 접근 방법을 알립니다
- (2) Exchange 이의 제기 양식에는 당사자가 접근성 지원이나 통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3) Exchange 관련 당사자나 직원의 친지는 Exchange 이의 제기 절차에서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
- (4) 주재자는 접근성 보조 도구나 통역이 접근성 또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한 이의 제기 신청인, 직원 또는 증인을 위한 절차를 정확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 중 언제든지 주재자는 접근성 보조 도구나 통역사가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설 경우 통역사나 기타 접근성 보조 도구를 퇴거시키고, 더 우수한 통역사나 접근성 보조 도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 주재자는 절차 중에 통역사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권한: 45 CFR sections 155.205 및 155.545

8. Exchange에 서류 보내기

- (1) 본 절차 규칙이나 주재자 명령에 따라 이의 제기 신청인이 문서나 기타 정보를 Exchange에 제공해야 할 경우, 이의 제기 신청인은 다음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 미국 우편, 수신: WAHBE Appeals Program, P.O. Box 1757, Olympia, WA 98507-1757.
 - (b) 이메일: appeals@wahbexchange.org.
 - (c) 팩스: 360-841-7653.
 - (d) 인편 전달, 또는 상용 택배 서비스, 810 Jefferson St SE, Olympia, WA 98501-1417.
- (2) 이 절차 규칙이나 주재자 명령에 따라 Exchange가 문서를 수령해야 할 경우, 정식 근무 시간 중에 Exchange 사무실에 도착한 경우에 Exchange가 그 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비공식 해결

- (1) Exchange는 다음을 포함한 비공식 해결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 (a)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후 Exchange는 자격 기록과 이의 제기 신청인이나 고용주 및 직원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여 심의회를 실시하지 않고 요청을 승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 (b) 이의 제기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 역시 Exchange에 비공식 해결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Exchange와 이의 제기 신청인이 이의 제기를 해결하는 데 합의할 경우, 비공식 해결 합의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이의 제기 신청인은 서면이나 전화로 Exchange에 이의 제기를 철회함을 통지해야 합니다.
- (3) 비공식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의 제기 신청인은 심의회 전 협의 및/또는 심의회 권리를 갖습니다.

권한: 45 CFR section 155.535

10. 심의회 통지

- (1) Exchange는 심의회 일정을 결정하면 심의회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이나 고용주 이의 제기 신청인 및 직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심의회 날짜와 시각, 진행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원격 회의의 경우, 통지서에 심의회

참석 시 필요한 전화번호와 기타 접속 코드 또는 개인식별번호(PIN)를 명시해야 합니다.

- (2) 심의회 통지에는 개인 또는 고용주 신청인이 심의회 전 협의 또는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의 제기가 절차 규칙 16에 따라 기각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 (3) 연방 규정에 따른 심의회 통지는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 고용주 이의 제기 신청인, 직원 또는 증인에게 접근성 지원이나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지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 고용주 이의 제기 신청인, 직원, 증인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권한: 45 CFR sections 155.205, 155.535

11. 심의회 전 협의 또는 심의회 일정 조정

- (1) 이의 제기 신청인은 Exchange에 심의회 전 협의나 심의회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일정 조정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심의회 전 협의나 심의회 일정 조정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재자는 서면 요청을 심사하고 즉시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3)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일이 Exchange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심의회 전 협의나 심의회 일정 조정 요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권한: 45 CFR sections 155.505 및 155.535

12. 심의회 전 협의

- (1) 주재자는 심의회 전 7일 이내에 심의회 전 협의를 실시합니다.

- (2) 심의회 전 협의에서 Exchange와 이의 제기 신청인, 또는 이의 제기 신청인의 대리인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 (a) 법률 문제를 포함하여 심의회에서 다룰 문제.
 - (b) 심의회에서 증언을 할 증인과 증인 수의 제한 또는 증언 내용.
 - (c) 심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
 - (d) 가능성이 있는 이의 제기 비공식 해결안.
 - (e) 효율적인 심의회 진행을 위한 기타 사안.
- (3) 심의회 전 협의는 주재자가 전화 또는 Exchange와 이의 제기 신청인이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진행되며 전자 기록됩니다.
- (4) 주재자는 주재자의 결정 및 Exchange와 이의 제기 신청인 사이의 합의를 포함하여 심의회 전 협의에서 취한 조치를 규정한 심의회 전 협의 명령을 입력합니다.
- (5)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이나 고용주 신청인 및 직원에게 i충분한 통지를 제공 및/또는 동의한 경우, 그리고 주재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의회 전 협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이의 제기 신청인의 적절한 통지, 계속, 심의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한: 45 CFR section 155.535

13. 심의회

- (1)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 또는 고용주 이의 제기 신청인 및 직원은 심의회 전과 심의회 중 합당한 시기에 심의회에서 Exchange가 이용하는 모든 문서와 기록을 포함한 이의 제기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2) 심의회는 주재자가 전화로 진행합니다. 심의회는 직접 참여하거나 Exchange와 이의 제기 신청인이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전자 기록됩니다.
- (3) 심의회는 이의가 제기된 자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주재자가 진행합니다.
- (4) 심의회에서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이나 고용주 이의 제기 신청인과 직원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a) Exchange의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를 제시합니다.
 - (b) 한 명 이상의 증인의 관련 증언을 제시합니다.
 - (c) 불리한 증언에 반박하거나 반대 심문하고 증거를 부인합니다.
 - (d) 방해를 받지 않고 주장을 제기합니다.

권한: 45 CFR section 155.535

14. 검토 기준

주재자는 반드시 이의 제기 기록을 완전 재검토해야 (de novo) 합니다. 최초 자격 결정을 참고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심사해야 합니다.

- (1) 자격 결정 시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 확인된 증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권한: 45 CFR section 155.535

15. 이의 제기의 철회

- (1) 이의 제기를 요청한 개인이나 고용주는 이의 제기 절차 중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이의 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요청은 반드시 다음을 통해 실시합니다.
 - (a) Exchange가 제공하고 이의 제기 신청 개인 또는 고용주 대리인이 서명한 양식, 또는 다른 서면이나 팩스, 우편 통지서를 통해

- (b) Exchange가 이의 제기 신청인의 증언을 위증 시 처벌 조건 하에 모두 기록하고 Exchange가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서면 철회 확인서를 보낸 경우, 전화를 통해
 - (c)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주재자에게 구두로
- (2) Exchange 이의 제기를 신청한 개인은 Washington Apple Health에 대한 자격 거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회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요청은 반드시 다음을 통해 실시합니다.
- (a) Exchange가 제공하고 이의 제기 신청인이 서명한 양식, 또는 다른 서면이나 팩스, 이메일 통지서를 통해.
 - (b) Exchange가 이의 제기 신청인의 증언을 위증 시 처벌 조건 하에 모두 기록하고 Exchange가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서면 철회 확인서를 보낸 경우, 전화를 통해
 - (c)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주재자에게 구두로
- (3) 서면 철회를 위해 제공되는 양식은 철회 사유를 포함해야 하며, 이의 제기 신청인이 이의 제기 신청과 심의회 권리를 다 알고도 철회함을 인정하고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 (4) 신청인이 이의 제기를 철회할 경우, 주재자는 절차 규칙 5에 따라 이의 제기 철회를 명령해야 합니다.

권한: 45 CFR sections 155.505 및 155.530

16. 이의 제기 기각

- (1) 주재자는 다음의 경우 이의 제기를 기각해야 합니다.
- (a) 이의 제기가 절차 규칙 3에 명시된 사유 중 한 가지에 따라 요청되지 않은 경우.
 - (b) 이의 제기 신청인이 이의 제기 대상이 되는 자격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c) 개인 이의 제기인 또는 고용주 이의 제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심의회 전 협의나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d) 이의 제기인이 절차 규칙 15에 따라 이의 제기 요청을 철회한 경우.
 - (e) 이의 제기인이 이의 제기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
- (2) Exchange는 이의 제기인에게 다음을 명시한 통지서를 제때 전달해야 합니다.
- (a) 기각 사유.
 - (b) 기각이 이의 제기 신청인의 공인 건강 플랜 또는 금전적 지원 자격에 미치는 영향.
 - (c) 이의 제기인이 기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각을 무효화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 (d) 이의 제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방법.
- (3) 기각 무효화: 이의 제기인이 기각을 무효화하고 이의 제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서면 요청을 할 경우 주재자는 기각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 (a) 이의 제기인은 기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각 무효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 (b) 요청서는 반드시 이의 제기를 기각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c) 이의 제기인은 서면으로 기각 무효화 요청에 관한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 거부 시, Exchange는 이의 제기인에게 기각 무효화 요청을 거부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e) 주재자가 기각을 무효화할 경우, Exchange는 이의 제기인에게 절차 규칙 4(4)의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권한: 45 CFR section 155.530

17. 이의 제기 결정

- (1) 절차 규칙 5에 따른 빠른 이의 제기를 제외하고, 주재자는 Exchange가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 결정을 발급해야 합니다.

- (2) 이의 제기 결정은 기록의 증거만을 토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 자격, 고용주 이의 제기, 또는 직원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이한 언어의 설명글을 포함한 결정문.
 - (b) 관련 사실의 요약.
 - (c) 결정을 뒷받침하는 규정 및 법률을 포함한 법적 근거 명시
 - (d) 결정의 효력일
 - (e)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의 2차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한 설명.

- (3) 이의 제기 후 자격:
 - (a) 이의 제기 결정에 따라 이의 제기 신청인 또는 직원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 이 변경은 결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결정일에 따라 향후에 효력을 갖게 됩니다.
 - (b) 이의 제기 신청인이 이의 제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효력을 가진 자격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경우, 이의가 제기된 자격 결정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이 향후에 적용됩니다.
 - (i) 자격은 최초 자격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다음 달 첫 날에 효력을 갖습니다.
 - (c)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이나 직원이 변경을 경험하고 보고한 경우, 해당 변경은 새로 보고된 자격 결정으로 우선 효력을 가지며 변경이 보고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 (d) 이의 제기 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한: 45 CFR section 155.545

18. Exchange 이의 제기 결정 분쟁 및 이의 제기

- (1) 개인 신청인이 공인 건강 및/또는 초과 플랜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 결정, APTC 자격과 금액 및/또는 본인부담금 감면, Exchange의 자격 결정 통지 지연, 또는 개인 필수 보험 면제 자격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인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a) 이의 제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결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b) 이의 제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HHS에 이의 제기합니다.
 - (i) Exchange는 HHS 이의 제기서 사본을 요청 시 이의 제기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인은 <https://www.healthcare.gov/downloads/marketplace-appeal-request-form-s.pdf>에서 양식 사본을 확인하거나 이의 제기인이 서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ii) 이의 제기인은 검토 또는 이의 제기 요청을 다음 주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Attn: Appeals
 465 Industrial Blvd
 London, KY 40750-0061

또는 요청서나 이의 제기 양식을 보안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1-877-369-0130.

- (iii) HHS 이의 제기 기관의 지시에 따라 Exchange는 보안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의 제기 기록을 HHS에 전송합니다.

- (2)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인이 주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격이나 보험료 지원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Exchange를 통해 2차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이의 제기:
- (a) 이의 제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 (b) 이의 제기 신청인은 주재자의 결정이 다음 등등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의 제기 신청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 (i) 법률에 부합하지 않음.
 - (ii) 기록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음.
 - (iii) 당사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음.
 - (iv) 심의회 당시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 확인된 증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c) 원래 주재자가 아닌 다른 주재자가 심의함.
- (3) 고용주 이의 제기 신청인은 2차 이의 제기 신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 (4) 고용주 이의 제기 신청에서 직원은 고용주 이의 제기 신청에 따른 자격 결정에 개인 이의 제기 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 45 CFR sections 155.505 및 155.545
